

수원-광명 고속도로
민 간 투 자 사 업
변 경 실 시 협 약

2013. 03. 29.

국 토 교 통 부
수도권서부고속도로(주)

변경 실시협약

국토해양부(이하 “주무관청”이라 한다)와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식회사(이하 “사업시행자”이라 한다)는 2008년 12월 31일 수원-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(이하 “실시협약”이라 한다. 이후 변경된 실시협약 포함)을 체결하였던 바, 동 사업을 진행하던 중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<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-141호, ‘10.06.25.시행>에 따라 실시협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기로 하여 2013년 03월 29일에 다음과 같이 본 변경실시협약(이하 “변경실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 정의

본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본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제2조 해지시지급금 산정

실시협약의 <별표 12>(해지시지급금)을 본 변경실시협약의 <별표 1>(해지시지급금)으로 변경한다.

제3조 실시협약의 효력변경

실시협약의 규정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,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. 다만,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4조 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

이 변경실시협약은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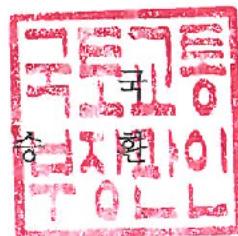
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로 하여금 아래 기재 일자에 이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IT OLL

卷之三

2013년 03월 29일

대한민국 토교통부 장관 서



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식회사
대표이사 최영운